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26호

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고시

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22조,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11월 23일
서울특별시장

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

1. 인정 해제 고시 내용

지정번호 및 명칭	성명	성별	생년월일	가·예능	주소
제35호 밤섬부군당도당굿	김찬섭	남	1948.5.6	밤섬부군당도당굿 (악사)	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(이하 생략)

2. 해제일 : 2017. 11. 15.

3. 해제사유 : 사망

4. 연락처

가. 전화번호 : 02-2133-2616

나. 전송번호 : 02-2133-1062

다. 연락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역사문화재과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27호

도시관리계획(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313호(2010.09.02.)로 변경 결정된 「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」 내 신정동 972-6외 2필지에 대하여 2017년 제12차(2017.07.26) 및 제15차(2017.09.27) 서울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7년 11월 23일
서울특별시장

I. 결정(변경) 취지

- 「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」 내 신정동 972-6외 2필지에 대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공동개발(지정)을 해제 및 보차혼용통로 개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항목 및 설치기준

을 신설 하는 사항임

II.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-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- ②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-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: 변경

1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가. 가구계획 : 변경없음

나. 획지계획 : 변경

- 지역여건변화 및 개발 잠재력을 수용할 수 있는 공동개발수립

☐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

가구 번호	도면 번호	면적 (㎡)	위치	면적(㎡)	계획내용		비고
					기정	변경	
13BL	3	1,968.1	양천구 신정동 972-4	577.6	972-5(권장)	972-5(권장)	
			양천구 신정동 972-5	572.8	972-4(권장) 972-6(지정)	972-4(권장)	972-6와의 공동개발(지정) 해제
			양천구 신정동 972-6	817.7	972-5(지정)	-	972-6와의 공동개발(지정) 해제

주) 그 외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에 관한 결정조서는 변경없음

다. 최대개발규모 계획 : 변경없음

2. 건축물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가. 건축물 용도계획 : 변경없음

나. 건축물의 밀도계획 : 변경없음

다.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 : 변경

☐ 용적률 완화 - 근린상업지역

- 대상지역 : 13, 25, 26-1, 29-1BL
- 기준/허용용적률 : 300%이하/500%이하(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 200%)
- 입지특성 : 지구중심기능 및 공공공간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 유도 지역
- 주요 인센티브 항목 : 권장용도, 대지내 공지, 공동개발 등

구분	항목		세분	완화기준	계획목표	비고	
기정	유도형	건축물 용도	권장	기준용적률 × (권장용도면적 ÷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) × 0.6	지구중심 기능유도	연면적 30% 이상	
		도시 경관	건축물 등 형태	기준용적률 × 0.02	도시경관 향상유도	우수디자인 등 유도	
		대지내 공지	공개 공지	기준용적률 × {(설치면적 - 의무면적, 의무면적 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%) ÷ 대지면적} × 2.0(피로티 1.0)	공공공간 확보		
		공동 개발	권장	기준용적률 × 0.15	적정개발 규모 유도		
	규제형	공동 개발	지정	기준용적률 × 0.15	규제형 항목		
		대지내 공지	침상형 쌓지형	기준용적률 × (제공면적 ÷ 대지면적) × 1.0(피로티 0.5)	규제형 항목	위치준수 및 45㎡이상 조성	
			건축 한계선	기준용적률 × (제공면적 ÷ 대지면적) × 0.2	규제형 항목		
	의무형	환경 친화	자연지반보존, 옥상녹화,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, 녹색주차장 등			의무형 항목	
	변경	유도형	건축물 용도	권장	기준용적률 × (권장용도면적 ÷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) × 0.6	지구중심 기능유도	연면적 30% 이상
			도시 경관	건축물 등 형태	기준용적률 × 0.02	도시경관 향상유도	우수디자인 등 유도
대지내 공지			공개 공지	기준용적률 × {(설치면적 - 의무면적, 의무면적 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%) ÷ 대지면적} × α	공공공간 확보	α : 개방형 2.0, 필로티형 1.0	
			보차 혼용 통로	기준용적률 × (제공면적 ÷ 대지면적) × α	공공공간 확보	α : 개방형 4.0, 필로티형 2.0	
공동 개발			권장	기준용적률 × 0.15	적정개발 규모 유도		
규제형		공동 개발	지정	기준용적률 × 0.15	규제형 항목		
		대지내 공지	침상형 쌓지형	기준용적률 × (제공면적 ÷ 대지면적) × 1.0(피로티 0.5)	규제형 항목	위치준수 및 45㎡이상 조성	
			건축 한계선	기준용적률 × (제공면적 ÷ 대지면적) × 0.2	규제형 항목		
의무형		환경 친화	자연지반보존, 옥상녹화,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, 녹색주차장 등			의무형 항목	

주) 그 외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은 변경없음

라. 건축물의 높이 : 변경없음

3.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가. 건축물 배치 : 변경없음

나. 대지내 공지 : 변경

☐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

- 대지내 전면공지를 활용한 보행공간 및 휴게공간 확보
- 지구내 동선체계의 효율성 확보

구 분		적 용 대 상	계획내용	비 고
기 정	전면공지	• 간선도로, 이면도로변의 건축한계선으로 확보	• 인도/차도 부속	
	공개공지	• 보행환경을 위하여 간선변 및 가각부 등 주요 보행 결절점 주변에 지정 - 침상형 공지는 지하철 연결 통로 설치 권장	• 8개소(위치지정)	- 쌈지형 공지 - 침상형 공지
	공공 보행통로	• 보행동선 단절부 및 보행공간 확보 필요지역	• 1개소	
변 경	전면공지	• 간선도로, 이면도로변의 건축한계선으로 확보	• 인도/차도 부속	
	공개공지	• 보행환경을 위하여 간선변 및 가각부 등 주요 보행 결절점 주변에 지정 - 침상형 공지는 지하철 연결 통로 설치 권장	• 7개소(위치지정)	- 쌈지형 공지 - 침상형 공지 사유:공동개발(지정)해제
	공공 보행통로	• 보행동선 단절부 및 보행공간 확보 필요지역	• 1개소	
	보차 혼용통로	• 주차출입이 불가능한 대지를 위한 통로 확보	• 1개소 (신정동 972-6 내)	- 폭 6m, 높이 6m 확보 - 신정동 972-5 주차장 진출입로

주) 특별계획구역은 별도의 계획에 따름

다. 건축물 형태 및 외관 : 변경없음

라. 교통처리 : 변경

☐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: 변경

- 간선 가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차량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, 이면부 차량진출입이 불가한 간선변 대지에 한하여 일부구간 허용
- 보행 편의성 제고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에 공공보행통로 지정

구 분		적용지역	계획 내용	비 고
기정	차량진출입 금지구간	- 강서로변 - 신월로변	- 주요 간선도로변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지정 - 교차로에 면한 대지의 경우 교차로에서 10m 이내에 주차출입구 설치 금지 ※ 공동개발 미이행에 따른 일부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지정	
	공동주차 출입구	이면부 진출입동선계획이 불가한 간선가로변 대지	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에 연결필지와의 경계부에 공동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주차진출입은 연결필지와 공동으로 설치하여야 함	
	공공보행 통로	기존에 통로의 역할을 수행 하고 있고,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	- 주요 가로 및 이면 주거지와의 보행흐름 연계 - 일반인에게 24시간 개방되는 보행공간으로 지정된 폭원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,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(특히, 여성 및 노약자, 장애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)	
	자전거도로 계획	신월로, 강서로, 북개도로변	- 지하철역, 관공서, 주요 교차로 등을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망 계획의 수립 - B=1.5~2m, L=3,656m (신월로, 강서로 B=1.5m, 북개도로 B=2m)	
변경	차량진출입 금지구간	- 강서로변 - 신월로변	- 주요 간선도로변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지정 - 교차로에 면한 대지의 경우 교차로에서 10m 이내에 주차출입구 설치 금지 ※ 공동개발 미이행에 따른 일부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지정	
	공동주차 출입구	이면부 진출입동선계획이 불가한 간선가로변 대지	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에 연결필지와의 경계부에 공동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주차진출입은 연결필지와 공동으로 설치하여야 함	
	공공보행 통로	기존에 통로의 역할을 수행 하고 있고,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	- 주요 가로 및 이면 주거지와의 보행흐름 연계 - 일반인에게 24시간 개방되는 보행공간으로 지정된 폭원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,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(특히, 여성 및 노약자, 장애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)	
	자전거도로 계획	신월로, 강서로, 북개도로변	- 지하철역, 관공서, 주요 교차로 등을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망 계획의 수립 - B=1.5~2m, L=3,656m (신월로, 강서로 B=1.5m, 북개도로 B=2m)	
	보차혼용 통로	주차출입이 불가능한 대지를 위한 통로 확보	- 보행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일반인에게 24시간 개방되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 내에 조성 - 신정동 972-6내 1개소 신설	- 폭 6m, 높이 6m 확보 - 신정동972-5 주차장진출입차로

주) 1. 공동개발 권장계획 이행시 공동주차출입구 조정 가능
 2. 가림길은 향후 주변지역 개발이 완료되어 노상주차장 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부서(양천구 교통지도과)와 협의하여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(안)을 시행토록 함

- ④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: 변경없음
- ⑤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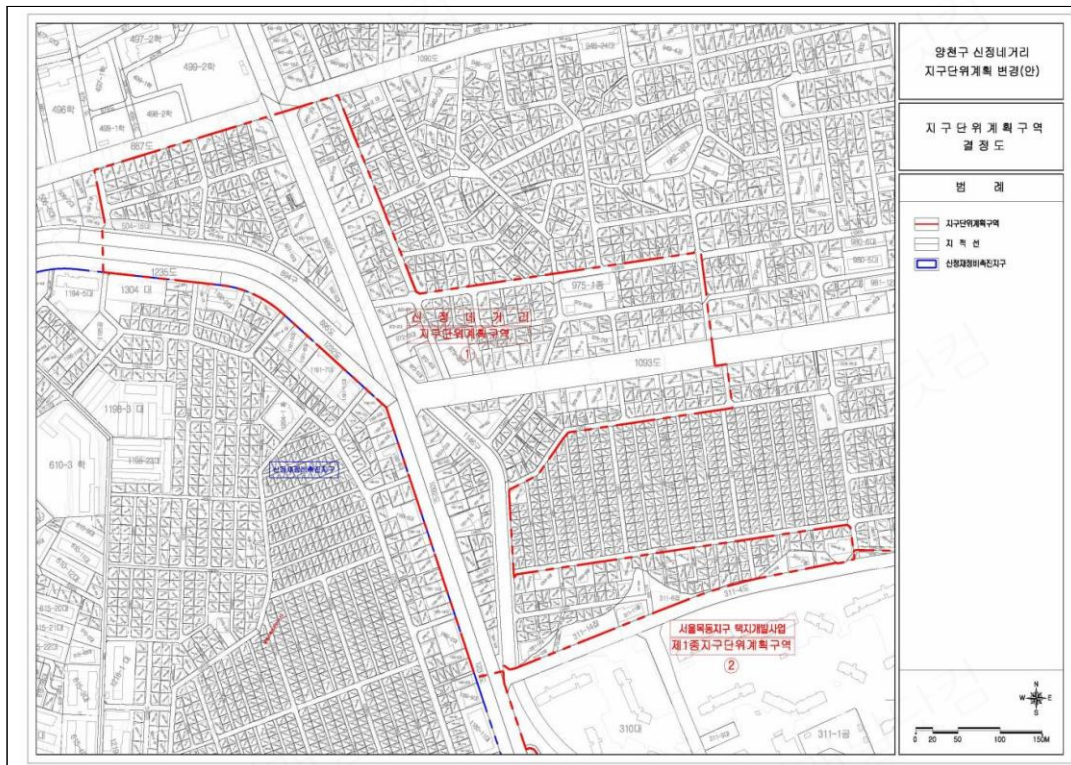
III. 관계도면 : 불임참조(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)

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(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IV. 열람장소 : 양천구 균형개발과(☎02-2620-3513) 및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(☎02-2133-8388)에 관계도서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<http://www.luris.mlt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입니다.

□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(변경없음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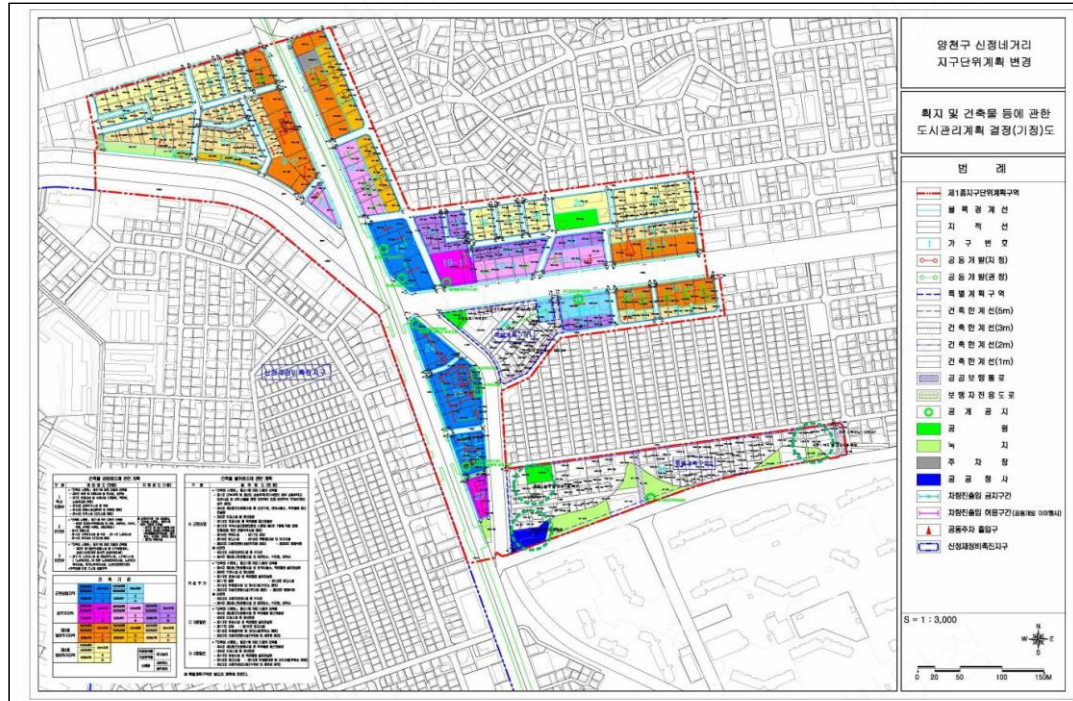
☐ 용도지역·지구 결정도(변경없음)



☐ 도시기반시설 결정도(변경없음)



□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(기정)



□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(변경)

